

## 【 10 】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11. .

제출자 : 양주시장

### 1. 제안이유

- 2005. 8.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제정과 2006. 2. 6.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3. 10. 19. 시행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중 법과 동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대 (안 제3조)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 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 나.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자원봉사센터소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소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함

#### 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주도로 하도록 하며 센터소장 임명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함

라.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규정(안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로 규정

마.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설정(안 제14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 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7조)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

양주시 조례 제 호

## 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 · 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시의 책무)**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의거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 2 장 자원봉사센터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9조에 의거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센터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② 소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 ③ 소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센터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센터의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 3 장 · 자원봉사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과년도 자원봉사실적과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 그 효율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학교는 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 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법 제13조에 의거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을 수 있다.

**제16조(경력 인정 등)** 시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
3. 센터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제18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등록취소)** 센터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수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2. 기타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 및 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